

공제가입증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우: 760 - 709)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

안동과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내용이 약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계약서 사형을 변경하실 때에는 본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가 필요하오니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저희 공제회로 청구하여 주십시오.
 - ① 청구서(공제회 양식)
 -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③ 신분증
 - ④ 연구주체의 정의 사고경위서 등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일반	공제가입기간	2019-04-14 00시 ~ 2020-04-13 24시		
	공제가입금액	유족급여 : 200 백만원 장해급여 : 200 백만원 요양급여 : 50 백만원 장의비 : 10 백만원 입원급여 : 5 만원		
	가입인원 수	2,671 명	총 공제료	2,661,110 원

계약자	계약자명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학교 (기관)명	안동과학대학교		
	연락처	전화	054-851-3639			설립구분	사립	
		팩스	054-852-9907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 안동과학대학교

공제가입내역

전문대학	대학생	간호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간호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건강관리과	전문대학	대학생	마케팅경영과
전문대학	대학생	물리치료과	전문대학	대학생	물리치료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보건행정과	전문대학	대학생	뷰티아트과
전문대학	대학생	뷰티아트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사이버보안과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과(산업체)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산업보건관리과
전문대학	대학생	스포츠레저과	전문대학	대학생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대학생	유아교육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축구과
전문대학	대학생	축구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치위생과
전문대학	대학생	치위생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컴퓨터정보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보안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산업경영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호텔과	전문대학	대학생	호텔서비스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산업체)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건축인테리어과
전문대학	대학생	국방의료과	전문대학	대학생	미래자동차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식품영양과	전문대학	대학생	의료공학과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공제회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illegible]

1.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인원·명단 통보 및 자동담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대학기)으로 가입인원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원(보조)연구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1-2-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1-2-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2-2. 정산일은 계약 만료 ()개월 전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보험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제가입기간 시작일 이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이 늦어질 경우 입금일 부터 공제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공제회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